



# 국내 B-C油의 가격 조정

- 고유황 B-C油 5.4% 인하
- 저유황 B-C油 3.6% 인상

## 동력자원부

**정부**는 지난 8.4 일자 0시를 기하여 국내 B-C油의 가격을 조정하였다.

이번 B-C油 가격의 조정내역(세전공장도가격 기준)을 보면, 고유황 B-C油(유황함량 4.0%)는 현재 73.61원 / l에서 69.67원 / l로 5.4%를 인하한 반면, 저유황 B-C油(유황함량 1.6%)는 현행 77.24원 / l에서 79.99원 / l으로 3.6%를 소폭 인상 조정하였다.

한편, 등유 가격의 자유화 문제는 경제행정규제 완화 및 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정과 관련, 내년도 상반기중 휘발유가격 자유화와 연계하여 검토 추진할 방침이다.

## 조정 배경

- 환경개선시책의 강화로 저유황 B-C油의 수요는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으나,
  - 국내 탈황시설의 미비로 고유황 B-C油는 수요에 비해 생산이 많아 수출하는 반면(생산량의 42%), 저유황 B-C油는 국내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하여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며(내수의 33%),

- 수입시에도 국내 저유황 B-C油의 저가책정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수입기피 현상이 대두되고 있음.

• 그동안 국내 석유류가격은 저유황유의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저유황 B-C油가격을 고유황 B-C油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로 책정하여 왔으나,

- 그 결과 국내 유황함량에 따른 가격격차 미흡으로 탈황시설의 자연을 초래하여, 국내 저유황 B-C油의 수급문제가 발생되는 만큼, B-C油 가격 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음.

유황함량 1%차이에 따른 가격격차 비교

유황 함량 차이 (%)	한 국	일 본	미 국	유 럽
가격차이 (\$/B)	0.34	1.5	1.1	1.1

## 조정내용

- 환경개선욕구 증대에 따라 늘어나는 저유황 B-C油의 수요에 대해 공급측면의 적정 대응기반을 조성할

## 가격 조정 내역

	현 행	조 정	차 이	조 정 률	
B-C油 가격	저유황(1.6%) 고유황(4.0%)	77.24원 / l 73.61원 / l	79.99원 / l 69.67원 / l	2.75원 / l △3.94원 / l	3.6% △5.4%

## 수 있도록

- 탈황시설의 투자축전을 위하여 저유황B-C油와 고유황B-C油의 가격격차를 국제수준으로 확대하였음.(유황함량 1%당 가격차이 : 0.34→0.96\$ / B)
- 다만, 물가불안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, 가능한한 현행 유가 수준유지를 위하여
  - 저유황B-C油 가격은 인상하고, 고유황B-C油 가격은 인하하였음.

## 조정효과

- 이번 B-C油 가격의 조정으로 탈황시설의 추진을 통한 국내 저유황B-C油 생산 기반 확충 및 저유황B-C油의 수입시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B-C油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.
- 탈황시설의 경제성 제고 효과 : 1.5\$ / B
- 저유황B-C油의 수입 부담 경감 : 0.6\$ / B
- B-C油 가격조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고유황B-C油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·수송용은 부담이 적어지는 반면, 저유황B-C油의 사용 비중이 높은 발전용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임. ♣

## ◎동력자원부고시(제90-47호)

## 석유류제품최고판매가격고시증개정

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 
국내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에 관한  
고시(동력자원부고시 제88-23호)중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90년 8월 4일  
동력자원부장관

- 제1항(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)의 가호(제조장 반출가격)중 저유황 경질중유(1.6W%), 경질중유, 저유황중유(1.6W%), 중유, 저유황B-C油(1.6W%), 저유황B-C油(2.5W%), B-

-C油의 세전가격 및 세포합가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단위: 원 / ℥)

유 종 별	구 分	
	세 전 가 격	세 포합 가 격
저유황경질중유(1.6W%)	112.99	124.29
경질중유	111.11	122.22
저유황중유(1.6W%)	95.46	105.01
중 유	87.43	96.17
저유황B-C油(1.6W%)	79.99	87.99
저유황B-C油(2.5W%)	76.12	83.73
B-C油	69.67	76.64

## —부 칙—

이 고시는 1990년 8월 4일 0시부터 시행한다.

